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 중 일부 사무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 추가(안 제27조제4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
2.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접수와 평가
3.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탁·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준비 업무 중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대한 정보 취득, 위탁기업 대상 조사참여방법 안내대행 및 조사대상위탁기업과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대상 설문조사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 협력채단에 위탁한다.</u> 1. <u>법 제14조에 따른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</u> 2. <u>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접수와 평가</u> 3. <u>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탁·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준비 업무 중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대한 정보 취득, 위탁기업대상 조사참여방법 안내대행 및 조사대상위탁기업과 수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대상 설문조사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924